

## 제도 도입배경



- 1 국외의 불법벌채 이슈와 합법목재 교역촉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
- 2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
- 3 『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』을 개정('17.3.21.)하였으며, '18.10.1.부터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.

## 우리나라 목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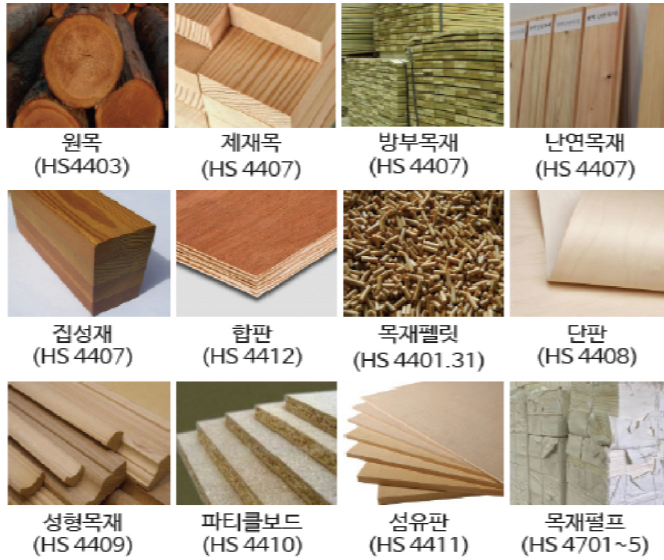


- 1 수입신고 및 검사제 도입으로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 강화
- 2 기 제도를 도입한 국가 등으로 목재류 수출 시 합법성 요건 구비로 수출 활성화
- 3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지위 향상 및 산림보전에 기여

### 각 나라 별 관련 제도

국가	제도명
대한민국	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('18)
영국	UKTR('13)
EU 27개국	EUDR
미국	Lacey Act('08)
인도네시아	SVLK('16)
호주	ILPA('14)
뉴질랜드	LHAS('23)
일본	Clean Wood act('17)

## 수입신고 대상품목



- 수입신고 시 목재이용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합법성 입증 서류와 상업송장(invoice)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(한국임업진흥원)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### 1 관련 사이트

- ✓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[unipass.customs.go.kr](http://unipass.customs.go.kr)
- ✓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 [trade.forest.go.kr](http://trade.forest.go.kr)

### 상담 및 문의

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  
1600-2954

## 수입목재의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



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『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19조의3제2항 및 『수입되는 목재·목재 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』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.

-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
-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서류(FSC, PEFC 등)
-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- 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(별지 제1호, 수출허가서 등)

\* 각 나라별로 합법성 서류가 상이하니, 국가별 표준자침(CSG)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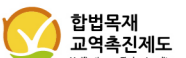
### 자세한 사항은

임산물교역시스템 내의 사전 진단 서비스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합법목재 전용 콜센터 (1600-2954)로 문의바랍니다.

# 합법목재 교역촉진

## 수입신고 단계별 서비스

건강한 지구를 위한  
책임 있는 행동



# 사전 진단



## 1 개요

- 통관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는지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입신고 관계 서류에 대하여 미리 진단받아 부적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입신고 사전진단 서비스

## 2 신청방법

- 서류 발급기관, 서류명, 수출국가, 수입업체, 수입품목 정보 등 서류에 대한 기초 설명을 포함하여 관계서류를 임산물교역시스템 내 입증서류 사전진단 게시판에 업로드
- \* 베트남과 뉴질랜드는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중

## 3 사전진단 서비스 접속경로

- 고객지원 → 목재수입 지원서비스 → 입증서류 사전진단 → 진단요청, 자가진단

## 4 서비스 절차



# 번역 지원

지원서비스 플랫폼 <http://trade.forest.go.kr>



## 1 개요

- 비영어권의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(관계서류) 등 수입신고, 합법목재 교역에 필요한 서류 번역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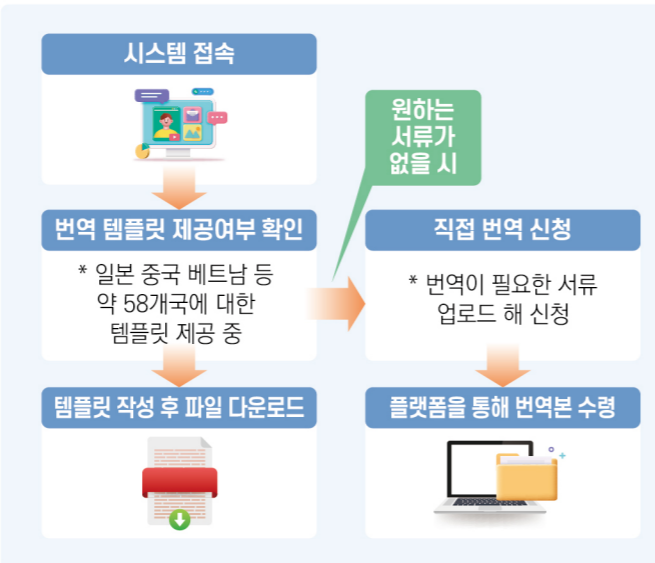
## 2 신청방법

- 번역 서식 다운로드 또는 직접 번역 신청
- \* 임산물교역시스템 내 번역 서비스 신청 게시판 이용

## 3 번역지원 서비스 접속경로

- 고객지원 → 목재수입 지원서비스 → 입증서류 번역지원 → 번역서식, 번역서비스 신청

## 4 서비스 절차



# 산림청 국가별 표준지침(CSG)



## 1 목적

- 목재합법성 입증을 위하여 국가별 관계서류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국가별 표준지침

## 2 사이트

- 산림청 임산물교역시스템([trade.forest.go.kr](http://trade.forest.go.kr)) → 알림자료 → 법령 및 지침 → 국가별표준지침(CGS)



라트비아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

목재합법성 입증서류	수집하는 목재 목재종류의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호	라트비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	비고
제 1 목재합법성 입증서류	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목재허가서	- 라트비아의 경우 양국 산림청 목재는 벌채 면적(felling license)과 목재 서비스(Forest Service)에서 발행 가능함.	p11, 23
제 2 목재합법성 입증서류	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, Chain of Custody,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,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,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	- FSC 인증서 (10292, 1564)의 산물이 FSC 인증을 받음 - PEFC 인증서 (1692, 524)의 산물이 PEFC 인증을 받음	
제 3 목재합법성 입증서류	국가별도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동등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으로부터 인정된 인증서	- PEFC 라트비아 인증서	
제 4 목재합법성 입증서류	지속가능성 관리요약서(대부분 유럽 국가 인증을 포함한다)를 확인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-	
제 5 목재합법성 입증서류	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직접받은 거래에서 운영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	-	

# 수입신고 절차

